



# CIRCULAR

36 Myeongji ocean city 9-ro,  
Gangseo-gu, Busan, 618-814  
Republic of Korea

Phone : +82-70-8799-8802  
Fax : +82-70-8799-8419  
E-mail : dykimm@krs.co.kr  
Person in charge : Kim DoYoung

To : 전 검사원 및 관련업체

No : 2020-7-E  
Date : 2020.07.23

제 목 (Subject)	8.62 자동화시스템의 형식시험 시험성적서 요구사항 변경
적 용 (Application)	2020년 8월 1일

1.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23절 자동화시스템의 시험성적서 관련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, 이 내용은 2021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1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----- 아래 -----

첨부 :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(국/영문) --- 1부. (끝)

#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개정(안)

2020. 7.



기 관 규 칙 개 발 팀

2020.08.01.일자 시행사항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3 장 형식승인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- 제 22절 &lt;현행과 동일&gt;</b></p> <p>2301. - 2302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2303. 시험성적서 104.의 4항과 관련하여 형식시험 완료 후 시험 조건과 그 결과 및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2304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4 절 - 제 37 절 &lt;현행과 동일&gt;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3 장 형식승인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- 제 22절 &lt;현행과 동일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3 절 자동화시스템</b></p> <p>2301. - 2302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2303. 시험성적서</p> <p>1. 104.의 4항과 관련하여 형식시험 완료 후 시험 조건과 그 결과 및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2. 104.의 4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장소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(가) <u>KS Q ISO/IEC 17025에 따른 KOLAS 인정 범위에 해당시험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시험기관</u></p> <p>(나) <u>ISO/IEC 17025에 따른 ILAC 인정 범위에 해당 시험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시험기관</u></p> <p>(다) <u>우리 선급에 인정시험기관 제도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</u></p> <p>(라) <u>우리 선급 검사원이 입회하는 적절한 시험기관</u></p> <p>2304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4 절 - 제 37 절 &lt;현행과 동일&gt;</b></p>	<p>(개정)</p> <p>- Circular 2017-1-E에 따라 시험기관 승인제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험기관 인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, 해외시험기관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 관련 우리 선급에 인정기관으로 등록된 곳이 없으므로 개정함.</p>